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가단539935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6. 6. 7.

판결 선고2016. 11.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3,257,360원 및 그 중 112,737,130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 D, E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2,73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113,257,360원 및 그 중 112,737,1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E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737,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만을 분배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만을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이 실제로 분배받은 수익금의 범위 내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 및 국민은행에게도 임대인의 허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따라서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직증명서 등 임차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서류 등을 다른 가해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행한 피고 E이, 원고가 부주의하게 그 허위서류에 기망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혜선

별지